

200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
----------	----

2002. 12.
도시관리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가. 주택국 소관(주택기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2. 11. 11

나. 회부일자 : 2002. 11. 12

다. 상정일자 :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1.29) 상정, 의결

3.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특징

가. 설치년도 : 2002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주택조례)

나. 사업목표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융자하고, 일반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다. 2003년도 사업개요.

< 수입계획 >

- 총괄 : 6,303백만원 으로 이는 2002년도 수입 계획인 5,111백만원 보다 1,192백만원(23.3%) 증액

- 용자금 회수 수입(원금 + 이자) : 1,101백만원
- 일반회계 출연금 : 5,000백만원
- 은행 예치금 적립금이자 : 91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111백만원

○ 항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감	비 고
계	6,303	5,111	1,192	
사업수입	1,101	46	1,055	
용자금회수 (원금)	904	37	867	
용자금회수 (이자)	197	9	188	
사업외수입	5,202	5,065	137	
일반회계 출연금	5,000	5,000	-	
적립금이자	91	65	26	은행예치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111	-	111	

< 지출계획 >

- 총괄 : 6,303백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지출 계획인 5,111백만원 보다 1,192백원(23.3%) 증액
 - 임대료 보증금 용자 : 5,465백만원(500만원×1,093세대)
 - 임대료 보조 : 684백만원(38,000원×12월×1,500세대)
 - 기금적립금 : 154백만원

○ 항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3년 예산(안)	2002년 예산	증감	비 고
계	6,303	5,111	1,192	
사업비	6,149	5,000	1,149	
용자금 지출	5,465	4,650	815	임대보증금 용자
기타사업비	684	350	334	월 임대료 보조
여유자금	154	111	43	
기금적립금	154	111	43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양재대)

- 본 안건은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보증금의 용자 및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금을 조성·운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기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02년도부터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 2003년도 주택기금의 규모는 63억3백만원으로서 자금조달은 용자금 회수 수입 11억1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0억원, 은행예치금 적립금이 9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11백만원으로 총당하고 자금운용은 종전에 생활보호자로 수혜를 받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급권을 잃은 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공공부문에서 건립할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1,093세대에 세대당 평균 500만원씩 총 54억6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용자할 계획이며, 일반임대주택 거주자 1,500세대에 세대당 3만8천원씩 12개월에 걸쳐 연 45만6천원을 지원해 주고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분에서 기금적립금으로 1억54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 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에 따라 주택시책추진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2002년도 기금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기금 조성액 50억원 중 당초 임대료 보조 32억원, 임대보증금으로 18억원을 용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 금년도 10월부터 지출항목을 전환하여 임대료 보조 3억5천만원, 임대보증금 용자로 46억5천만원을 변경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상했던 보조대상자 52,000여 세대중 10월 현재 2,889세대에 불과 한데다 자치구별로 광진, 구로, 금천, 관악구는 200세대가 넘고 있으나 용산,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구 등은 10~20세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한 관계 자치구의 노력부족 또는 홍보부족에 기인 된다고 사료되는 등 주택기금운용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택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지출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기금관리로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02. 9월 「기금관리 종합 개선방안」 방침에 의거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주택기금” 등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택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주택조례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주택기금 등 사회복지관련 기금 통합을 위한 조례를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여 기금 운용계획 수립 부서와 집행부서의 불일치에 따른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